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박경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5년 9월 30일

발 의 자 : 박경희 의원

찬 성 자 : 이진삼, 김혜미, 황춘하
서호성 의원 (4인)

1. 제안이유

2014년 8월 7일 개정·시행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어,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아울러 제명과 기타 경미한 자구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변경하고 별표 및 별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.(별표, 별지 제2호서식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

나. 입법예고 :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생략함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없음.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신분증규칙”을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신분증 규칙”으로 한다.

별표 후면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하고 “199 년”을 “20 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하고 “19 년”을 “20 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개인정보 보호법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